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27호

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758호, 2022.12.1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국토교통부 장관

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중, 인성검사의 명칭변경 및 안전운전과 무관한 문항 삭제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검사구분별 검사항목(안 별표1)

: 인성검사 명칭을 운전적응력검사로 변경

나. 검사의 방법(안 별표2)

: 인성검사 문항을 안전운전과 무관한 문항을 삭제 및 개선

다. 검사의 측정내용(안 별표3)

: 인성검사 명칭을 운전적응력검사로 변경

라. 검사의 판정기준(안 별표4)

: 인성검사 문항의 개선으로 검사 판정기준의 응답수 및 배정을 조정

마. 부칙

: 검사항목 개선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경과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교통서비스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44-201-3824, 3825(팩스 044-201-5582)

4. 기타

○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・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